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지배체제와 주민의 신앙*

조성윤**·박찬식***

차 례

1. 머리말
2. 이형상의 부임과 초기 활동
3. 신당 파괴와 토착 지배 세력
4. 유교 의례의 정비
5. 맺는말

1. 머리말

이 글에서는 조선후기 제주도 지역이라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국가가 어떻게 유교를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주민들에게 전파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 종교 또는 토착 지배 세력과 얼마나 상호 갈등을 빚었고 또 공존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민의 신앙 생활과 이를 통제, 또는 포용하면서 지배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국가와의 관계가 밝혀질 것이다.¹⁾

이를 위해서는 조선왕조의 지배체제의 특징과 함께 제주도의 지역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제주도의 지리적 특징을 사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을 빌려 말한다면 “제주는 彈丸만한 작은 섬으로 바다 모퉁이에 외지계 위치하고 있는 조정에서 가장 먼 곳”²⁾으로 “王化가 미치지 않는”³⁾ 곳이었다. 또한 제주는 “물길이 몇천 리나 되

* 이 논문은 199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학부설연구소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제주대학교 사학과 강사

1) 제주도의 유교 지배 체제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간략히 정리한 바 있다. 조성윤, 「19세기 제주도의 국가제사」, 『19세기 濟州社會 研究』, 一志社, 1997.

어 위협을 무릅쓰고 험한 길을 내왕할 때 걸핏하면 몇달이 걸리니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⁴⁾ 곳이었으므로, 관리들이 가장 부임하기를 꺼리는 곳이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는 중앙집권 체제 속에서 점차 독자성을 상실해 가던 육지의 다른 지방과는 달리 상당히 오랫동안 독립적인 정치적, 경제적 단위로 존재해왔다. 적어도 고려 중기까지는 星主·王子로 대표되는 耽羅國으로 있었고, 조선 초기까지도 토착 지배 세력이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조정에서도 이들을 土官職으로 임명하여 사실상 자치를 허용하였다.⁵⁾ 이러한 상대적 독자성을 염두에 둔다면 조선후기까지도 제주도 주민들에 대한 중앙 권력의 통치는 상당한 한계를 지닌 채 행사되었을 것이며, 따라서 국가가 의도하는 대로 지배 체제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많다.

조선왕조가 채택한 국가 이념은 유교였다. 유교를 바탕으로 국가 체제를 건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교 정치를 펴 나갔다.⁶⁾ 그러나 당시 제주도 주민의 의식을 지배하던 신앙은 巫敎였다. 국가가 향교를 설치하고, 경서를 보급하고, 과거를 장려하면서 유교 이념의 보급에 힘쓰고 있었지만, 육지 다른 지방들에 비하면 훨씬 약했고, 양반 관료로의 진출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던 토착 지배 세력들은 유교 이념 학습에 열을 올리지 않았다.⁷⁾ 이런 상황에서 대중들의 무교 신앙이 좀처럼 바뀌지 않았던 것은 당연하다.

이 글에서는 특히 유교와 주민의 신앙 체계로서의 무교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갈등을 빚었던 대표적인 사건인 李衡祥 牧使의 神堂 파괴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숙종 때 부임했던 이형상 목사는 민간 신앙의 상징이었던 신당을 파괴하고 巫覡들을 귀농시켰으며, 祀典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사 체계를 정비하였다. 이 사건

2) 『中宗實錄』 卷12 中宗 5年 11月 甲戌.

3) 『正祖實錄』 卷11 正祖 5年 6月 戊子.

4) 『正祖實錄』 卷38 正祖 17年 11月 癸丑.

5) 조선시대의 土官制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咸鏡道와 平安道 등지에도 영토 확장에 따른 군사정책의 일환으로 설치된 것으로, 중앙으로부터 격리된 범위 내에서 지방 사회의 군사적 사회적 有力層에게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특수한 관직이었다. 吉田光男, 「十五世紀 朝鮮의 土官制——李朝 初期 地方支配體制의 一斷面」, 『朝鮮史研究會論文集』 第18集, 龍溪書舍, 1981.

6) 조성윤, 「정치와 종교: 조선시대의 유교 의례」, 『사회와 역사』 53호, 한국사회사학회, 1998.

7) 조성윤, 「조선후기 제주도 지방의 신분 구조」, 『한국의 전통 사회와 신분 구조—한국 사회사연구회 논문집 제27집』, 문학과지성사, 189-192쪽.

은 무교 중심이었던 제주도 주민의 신앙 생활을 지배체제에 순응하는 형태로 바꾸어 놓으려는 유교 지배 세력의 적극적인 대응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유교 윤리를 강조하는 편에서는 이를 대단히 커다란 업적으로 평가하는 반면⁸⁾, 무교의 탄압 행위를 비판하는 편에서는 민중 신앙의 파괴자로 대단히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다⁹⁾. 그 중에서도 신당을 파괴한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만이 알려졌을 뿐, 신당을 파괴했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역사적 의미는 물론 그 뒤 무교와 불교의 세력이 과연 얼마나 약화되었고, 반대로 유교가 얼마나 뿌리를 내렸는지는 검토된 바 없다.

이형상 목사의 목표는 제주 지역사회에 유교 이념을 뿌리내리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 유교 원리에 입각한 교육 제도와 제사 체계의 정비였다. 신당을 파괴하고 무격들을 강제로 귀농시킨 것은 다름 아닌 유교식 제사 체계를 확립하는 정지작업이었던 셈이다. 유교식 제사 체계의 확립은 그가 지향하는 유교 이념에 충실한 국가재조의 기초에 해당되는 것이었다¹⁰⁾.

이 글에서는 『濟州啓錄』를 포함한 지방 관찬 사료들에 나타난 내용을 주자료로 삼고, 그 밖에 조선왕조실록 등 다른 보조 자료를 이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형상은 많은 양의 문집 뿐만 아니라 당시 제주도 상황을 『耽羅巡歷圖』라는 畫帖으로 남겨 놓고 있기 때문에 보다 생생한 분석이 가능하리라 본다.

2. 이형상의 부임과 초기 활동

이형상은 그의 나이 50세였던 1702(肅宗 28)년 봄에 제주 목사로 부임했고, 이듬해 봄에 파직당해 돌아갔다. 따라서 그가 재직했던 기간은 1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그 뒤 永憲祠에 배향된 몇 안되는 인물 가운데 하나이고, 평생 142種 326冊이라는 엄청난 분량의 저술을 남긴 당대의 학자이다. 그 중에는 여러 권의 제주에

8) 金錫翼, 『耽羅紀年』, 肅宗 28年(1702), 『耽羅文獻集』, 제주도 교육위원회, 1976.

9) 이러한 평가는 주로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볼 것. 玄吉彦,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인식-李衡祥목사의 神堂 철폐에 대한 설화적 인식-」, 『耽羅文化』 第2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3.

10) 이형상목사의 유교식 제사 체계 정비에 관해서 다른 글에서 간략히 지적한 바 있다. 조성윤, 「19세기 제주도의 국가제사」, 『19세기 濟州社會 研究』, 一志社, 1997.

관한 기록이 들어 있어 조선후기 제주도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의 저서를 빼 놓고는 연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부임 당시 이형상의 눈에 비친 제주도의 사정은 그가 저술한 『南宦博物誌』와 그가 조정에 올린 『狀啓』, 그리고 제주도를 巡歷하면서 畫工에게 그리게 하고 자신이 내용을 적은 『耽羅巡歷圖』에 남아 있다¹¹⁾.

그는 오자마자 제주도 지역 주민의 사정을 살폈다. 그가 볼 때 제주도는 경지 면적도 3,000결로 다른 지역에 비해 넓지 않고, 인구도 9,100호 정도이지만, 進上하는 貢物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몇 배나 많았다. 또한 방어 요충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야할 軍役도 매우 컸으므로 民生이 어려웠다. 그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개선책을 狀啓로 올렸다¹²⁾. 이 자료를 토대로 당시 제주지역 사정을 정리해 보자.

그가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인 것은 牧子 문제였다. 당시 제주도의 국영 목장에 소속된 목자는 모두 公賤으로 1,200여명쯤 되었다¹³⁾. 이들은 평소 말 7,600여마리와 소 620여마리를 관리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에게 지워진 부담이었다. 그들은 목장에서 마소가 죽거나 잃어버리면 변상해야 했는데, 값을 길이 없을 경우 부모와 처자를 팔거나 자신을 전당잡혔다고 하였다. 사실 이러한 기준은 매우 가혹한 것이었다. 그 당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부모를 판 경우가 5명, 처자를 판 경우가 8명, 자신을 전당잡힌 경우가 19명, 동생을 판 경우가 26명으로 모두 58명이 여기에 해당되었다. 그가 볼 때 지나친 부담 때문에 인신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人倫에 크게 어긋나는 중요한 문제였다.

둘째로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潛女와 鮑作과 船格을 겸하는 지아버인 浦作人에게 지워진 부담이었다. 그가 “과거 300여명이던 것이 지금은 88명으로 줄었”으며, 그 이유는 이들이 공납하는 전복이 9,000여첩, 오징어 860여첩, 그리고 많은 양의 미역 등

11) 權寧徹이 宗家에서 소장하고 있는 李衡祥의 저서를 정리하였다. 이 중 많은 부분이 『瓶窩全書』 全10卷(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로 영인되었다. 權寧徹, 『瓶窩李衡祥研究』, 韓國研究院, 1978; 權寧徹, 『瓶窩全書 解題』, 『瓶窩全書』 卷10,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耽羅巡歷圖』는 제주시가 1994년 영인본을 펴냈다.

12) 그가 올린 장계의 간략한 내용이 肅宗實錄 卷37 肅宗 28年 7月 辛酉(12日)에, 그원본인 「濟州民瘼狀」과 「濟州請繼後給案狀」이 『瓶窩集』 卷17, 7-18쪽(『瓶窩全書』 一,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에 실려 있다.

13) 牧者는 良役이었지만, 驛吏·鹽干과 마찬가지로 賤役으로 간주되었고, 한번 맡겨지면 좀체로 벗어날 수 없는 苦役이었다. 상세한 것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朴贊植, 「17세기 濟州島 牧者의 실태-李衡祥의 『耽羅狀啓抄』를 중심으로」, 玄旨金榮墩博士 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濟州文化研究』,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3.

으로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듯이, 잠녀와 포작인의 고역(苦役)은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세째로 관심을 가진 것은 배 문제였다. 제주도는 육지와 왕래하기 위해서는 배가 필수적이고 실제로 많은 배가 필요하였다. 특히 많은 양의 공물을 수시로 조정에 올려 보내고, 통상을 통해 제주도의 생산물을 내다 팔고 필요한 물자를 구입해 오려면 상당한 수의 배가 있어야 했는데, 당시 제주도의 배는 제주읍의 官船 1척, 私船 6척, 정의현의 관선 1척 뿐이었다고 하였다. 때문에 배를 새로 여러 척 건조해야 했는데, 배를 건조하려면 많은 인원이 오랜 기간 동안 동원되어야 했다. 따라서 그는 백성들을 노력에 동원하는 대신, 조정에 統營에서 만기가 된 戰船 4척을 싼 값에 사들이려 하는데 허락해 달라고 청원하였다.

네째로 상평창 곡물, 즉 환곡 가운데 耗穀을 줄여 주어 민의 부담을 줄이고 일부는 관청 경비로 사용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다섯째로 그동안 제주도내 각 軍門 將校들이 오래 근무해도 지방관으로 나간다가 나 하는 조치가 없었으므로, 사기 진작의 차원에서 이들에게 벼슬을 내려 달라고 청원하였다.

여섯째로 養子를 들이는 것은 禮曹가 허가하는데, 제주도 백성은 멀리 떨어져 있어 허가받기가 어렵다. 목사가 직접 허가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하였다.

그밖에 여러 가지 제주도 실정에 관해 보고한 결과, 조정의 허락을 얻어 다음 사항을 실행에 옮겼다.

① 牧者가 말을 징출하는 수를 반으로 줄여주고, 인신매매, 곧 부모 처자를 팔았던 것을 贖還하고 또다시 사람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을 세웠다.

② 아무 대가 없이 진상하던 전복을 관가에서 값을 쳐 지급해 주도록 하여, 갯가 백성, 특히 잠녀와 포작들의 부담을 줄여 주었다. 이 조치는 더 이상 잠녀와 포작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필요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③ 환곡 耗穀을 줄여 관청에서 사용하게 해 백성의 힘이 넉넉해졌다.

④ 퇴역한 배를 통영에서 사오니 백성들의 부역이 줄어들었다.

⑤ 각 군문 장교들 중 오래 근무한 자에게 벼슬을 주니 벼슬길이 열렸다.

⑥ 집안의 대(後嗣)를 잇도록 公文을 내려주니 끊어질 제사가 이어지게 되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형상이 제주도에 부임하고 보니 민생에 많은 문제가 있어, 조정에 그 사정을 알려 부역을 줄이고, 養子들이는 일은 쉽게 허락해주고 무관의 벼슬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이다. 목사가 조정에 알려 개선한 사항들 중에는 ①부터 ④까지는 목사, 잡녀, 포작인을 비롯한 평민, 천민에 직접 관련된 것들이고, ⑤와 ⑥은 지방 무관과 양반들의 숙원 사항을 해결한 것이었다.

이러한 목사의 발빠른 조치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크게 환영하였다고 하였다. 이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제주목에 부임했던 목사들이 선정을 베풀기 보다는 수탈을 일삼는 것이 더 일반적이었으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그만큼 목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¹⁴⁾. 때문에 이형상처럼 비교적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목사가 부임하면 그에 대한 환대는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 있었다.

3. 신당 파괴와 토착 지배 세력

다음으로 이형상이 관심을 기울인 것은 신당의 철폐와 무격의 귀농이었다. 조선왕조를 수립하고 유교를 중심으로 체제를 정비하던 초기부터 유교 지식인들은 불교와 무교 세력과 끊임없는 대결을 벌여왔다. 무교에 대한 유교 지배 세력의 탄압은 무당을 서울 도성에서 내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는데서 드러난다.¹⁵⁾ 그리고 세종 18년의 '京外妖巫檢束法', 세종 26년의 '禁陰祀條例', 성종 3년의 '禁陰祀節目', 성종 6년의 '城內禁陰祀法' 등이 계속 이어졌다. 고려시대까지 지배적인 종교였던 불교와 무교를 하루 아침에 없앨 수는 없었지만, 이들 세력을 밀어내야 유교가 들어설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무당들이 계속 성내에 들어와 무업을 하기 때문에 금령은 계속해서 내려졌다. 이는 뒤집어 이해하면 무당을 필요로 하는 종교적 욕구가 성안에 계속되었음을 의미한다¹⁶⁾. 적어도 사대부 관료들은 유교의

14) 보기를 들면 ①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근래 제주목사는 오로지 사람을 골라서 보내지 못하여 탐욕스러운 손에 맡겨져서 侵虐이 극심합니다. 그곳 백성들이 원망하여 말하기를 '차라리 倭奴에게 죽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민생의 고통스러움을 가히 알 수 있습니다." 『明宗實錄』 明宗 10(1555)年 正月 丁未. ② "탐라 지역은 武夫의 이권쟁기는 소굴이 된 지가 오래입니다. 副護軍 李郭이 제주에 있을 때 탐욕스러워 혈값으로 良馬를 억지로 매입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선물로 증여한 일이 잇달아 있었습니다." 『仁祖實錄』 仁祖 12(1634)年 9월 丁卯.

15) "경성내에 거주하는 무당과 여염 내에 유숙하는 승려는 죄를 묻는다"(京城內 巫覡 居住者閭閻內 僧尼留宿者論罪) 『經國大典』 刑典 禁制條.

16) 조흥윤, 『巫: 한국무의 역사와 현상』, 민족사, 1997.

례를 실시함으로써 당연히 불교 의례와 각종 무교 의례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왕실에서는 자주 法會를 열었고, 자연 재해가 오래 계속되면 祈雨祭를 무당을 불러 굿을 통해 실시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왕 또는 일부 관료들도 이러한 현실적인 괴리를 인정하여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국가 의례를 수행하면서도, 대중들의 무교 신앙을 묵인하는 태도를 취했다. 특히 지배층이 家禮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심지어는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 과거에 합격한 사대부들 까지도 조상의 위패를 무당의 神房에 모셔 놓고 치성을 드리게 하거나, 절에 모셔 놓고 기원하면서, 家禮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¹⁷⁾

유교 지배 관료 중에는 유교 이념에 따라 의례를 실시하면서도, 불교나 무교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취하는 세력이 강했다. 때문에 유교 원리에 충실하고 불교와 음사를 강하게 비판하는 세력들은 이들과 계속해서 갈등을 빚어왔다.¹⁸⁾ 율곡의 일기에 남아 있는 기사를 보기로 들면,

開城府 儒生들이 松嶽山의 淫祠를 불질렀다. 왕대비가 내관을 보내 중지시켰으나, 유생들이 듣지 않았다. 임금이 금부에 명령하여 유생들을 잡아와 그 죄를 다스리려 하니, 조정 신하들이 간하고 심지어는 學館의 유생들까지 간쟁하게 되자, 할 수 없이 풀어주었다. 당초부터 민족이 귀신을 좋아하여 송악산에다 음사를 만들고 ‘大正祠’라 이름하자, 이 풍조가 온 나라에 세차게 번져 귀신 모시기를 정성껏하여, 쓸데 없는 낭비가 심하고, 심지어 남녀가 혼숙하여 추문이 많았다. 그래서 유생들이 분하게 여겨 음사를 불지르니 識者들이 통쾌하게 여겼다.¹⁹⁾

고 하여 유생들이 신당 파괴에 적극 나섰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유교 원리에 충실하려는 지식인일수록 신당 파괴를 통한 무교 신앙의 제거는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되곤 하였다. 이 점은 다산 역시 “귀신불이가 변괴를 일으키는 것은 무당이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 무당을 베고 그 신당을 헐어 버려야 요사한 것이 의지할 곳이 없게될 것이다”²⁰⁾라고 지적하며 신당을 파괴할 것을 강조한 데서 보듯이, 조선시대 내내 일관된 경향이었다.

17) 韓汝勳, 「朝鮮王朝初期에 있어서의 儒敎理念의 實踐과 信仰·宗敎-祭祀問題를 中心으로」, 『韓國史論』 3,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76, 158-163쪽.

18) 韓永愚, 「朝鮮前期 社會思想研究」, 知識産業社, 1983, 41-48쪽.

19) 李珥, 『石潭日記』, 민족문화추진회 편, 도서출판 숲, 1998, 17쪽.

20) 丁若鏞, 茶山研究會 譯註, 『牧民心書 V』, 創作과批評社, 1985, 157쪽.

하지만 초자연적인 힘으로 상징되는 천신, 지지, 인귀 등 각종 신을 섬기던 일반 대중들의 믿음과 의례 행위를 유교 의례 체계 속으로 끌어 들여 무교 세력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무교는 대중들의 종교적 심성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었으며, 신비적인 요소를 크게 줄이고 대신 세속적 합리적 원리에 따라 재구성한 유교 의례로는 굿이 담고 있는 종교적 성격을 대치하기가 어려웠다²¹⁾. 때문에 유교가 지배 이념이면서도 오랜 세월 동안 무교는 일반 대중들 속에서 살아 남을 수 있었다.

이형상목사가 판단하기에 제주도 주민들의 정신 세계는 무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 제주도 주민들은 각 마을에는 물론이고 “산의 숲이나 하천·연못·언덕·평지의 나무와 돌에도 모두 신사를 세우고” 치성을 드렸다. 각 마을 주민들이 모시는 신당은 숲, 하천·연못·언덕·평지의 나무와 돌이 한 데 모인 곳 등에 자리잡고 있었다. 이것은 주민들이 이러한 지역을 다른 일상적인 삶의 영역과는 구분되는 신성한 자리로 여기는 곳이었다²²⁾. 또한 “배를 띄울 때는 귀신의 재앙이 있음만 알지, 관가의 명령이 있음은 알지 못하며, 진상선이 바람을 기다릴 때도 반드시 신당에 하직 인사를” 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다²³⁾고 지적하였듯이, 농사, 수렵은 물론 잡녀들과 어부들의 바다 활동은 역시 무교 신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그는 “무격배들의 속이는 습속은 천하 만고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고질적인 폐단 임은 말해보아야 무익합니다. 이 섬에 이르면 더욱 특별합니다. 이미 위아래 명분도 없고 의리도 알지 못합니다. 집집마다 位를 세우고 곳곳에 祠를 세워 崇奉하는 버릇이 내륙 지방에 비해 백배나 됩니다”라고 지적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았으며, 특히 무 신앙의 지도자에 해당하는 무격들의 위세를 꺾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았다. 그는

男覲, 女巫들이 기승부리고 사람을 부리며, 무뢰한들은 堂漢이라 칭하면서 서로 結契하니 그 숫자가 천을 넘습니다. 혹 여염집에서 밥을 털어 먹거나 신당에서 소를 도살합니다. 시골 백성들이 留置하여 두는 면포와 주단은 처음에는 귀신의 재앙으로

-
- 21) 조성윤, 「정치와 종교: 조선시대의 유교 의례」, 『사회와 역사』 53호, 한국사회사학회, 1998.
- 22) 文武秉은 堂은 堂神이 卜地한 神聖處이며, 당을 설치한 마을 사람들의 성역관념이 작용하는 곳이며, 당이 있는 곳은 과거 마을이 설촌되면서부터 성소로서 마을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고 지속시켜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보았다. 文武秉, 『濟州島 堂信仰 研究』,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19쪽
- 23) 李衡祥, 『南宦博物』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내어주지 않으면 '神差'라 하면서 당환을 보내어 결박하고 약탈합니다. 심지어 우마를 뺏기도 하는데 그 숫자가 거의 백에 가깝습니다. 또 전답을 빼앗아 나누어 먹으면서 '位田' 또는 '捨施'라고 합니다. 밭이 이어져 두둑길이 되고 신당에는 珠貝가 쌓입니다. 배를 띄울 때는 귀신의 재앙이 있음만 알지, 관가의 명령이 있음은 알지 못하며, 진상선이 바람을 기다릴 때도 반드시 신당에 하직인사를 합니다. 이같은 풍습은 지극히 괴상하고 해괴합니다.

인심의 따르고 저항함이 이와 같으며, 잡스런 부류들이 무리지으니 심히 우려됩니다. 그 폐습을 보면 걱정이 혹세무민하는 데만 그치지 않습니다. 金淨의 『風上錄』에서 "사람을 災禍로 위협하여 재물을 모음이 마치 흙을 긁어 모으는 것 같다"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 비록 금지하려 하지만 그 형세가 말미암을 길 없습니다.²⁴⁾

라고 하였다. 이 기록에서 보듯이 그는 무력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쉽게 깨뜨리기 어려운 형세로 파악하였다. 실제로 무교의 중심은 무당이었고, 그들의 조직은 공권력 투입을 통해서는 아니면 파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형상의 신당 파괴를 정작 본인은 기록을 통해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 보다는 오히려 제주도에 부임하면서 선정을 베풀었더니 제주도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신당을 파괴하고 무교 신앙을 버린 것으로 묘사하였다. 이형상은 자신의 선정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적고 있다.

A. 도민 칠백여명이 巾浦(건입포를 가리킴)에 모여서 임금의 은혜에 절을 올리고 공(公)에게 와서 인사를 올렸다. 공은 이에 음사의 폐단을 날날이 말했다니 모두들 "공의 명령이 있는데 어찌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고, 나와서는 서로 전달하여 신당 129곳과 두 곳의 寺刹을 한꺼번에 불사르고 佛像을 바다에 던져 버렸다. 천 명에 가까운 무당들은 모두 그들의 案籍을 불사르고 歸農시켰다. (『行狀』)

B. 지금 순력할 때 삼읍 백성 십백이 무리를 지어 곳곳에서 송축하는 것은 이번 備局에서 回啓한 내용 가운데 변통하여 준 혜택 때문입니다. 지난달 20일 鄉所의 儒生, 武士, 각 면의 面任, 각 리의 里任들이 서로 정결한 곳에 모여 북쪽을 향해 네 번 절한 뒤, 800여명이 臣에게로 와서 말하였습니다. "오늘의 나라의 은혜는 옛날에도 없던 것입니다. ... 은혜가 이미 이에 이르렀으니, 작은 정성이 스스로 끓어 올라 백성들이 서로 의논한 바 있습니다. 섬의 풍속이 ... 임금의 교화에 젖지 못하였습니다. 같은 성씨와 가까운 친족끼리 서로 혼인을 하며, 혼인 때 交拜를 행하지 않고, 남자가 장가들 때 饌을 보내며, 여자의 몸뚱아리를 가리지 않고, 아내가 있어도 다시 아

24) 위의 글.

내를 얻고 지아비가 있어도 지아비를 바꾸는 것들은 法과 禮에 가장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하여 서로 금지하겠습니다. 음사는 모두 철폐하여 은혜를 머금고 덕을 그리워하는 정성을 나타내겠습니다.”라고 일제히 와서 호소하였다. 나는 이를 의심했지만, 잘 달래 보냈습니다.(『南甯博物』)

C. 이튿날 삼읍에 있는 신당 129곳과 私家에서 귀신에게 기도하는 물건과 길가의 무더기 숲들과 무격배들이 神衣와 神織을 스스로 불태우니 한꺼번에 재로 되었습니다. 심지어 나무 뿌리나 불상을 헐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남아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삼읍 수령들이 연속하여 첩보했습니다.(『南甯博物』)

D. 다음날 巫男 수백명이 일제히 나와 호소하기를 “이는 백성들이 즐겨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관에 소용되는 綿布를 모두 무격에게 떠맡기니 빈손에 납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무당이 되어 구르고 굴러 풍속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미 혁파하였으니 이 폐단이 영구히 끊어질 것입니다. 巫案에 올라 있는 것도 없애주면 대대로 서로 금지하고 사람마다 격려할 것입니다. 영원히 무당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평범한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애걸하였다.(『南甯博物』)

E. 父老 가운데 지식 있는 자들이 와서 알리기를 “음사들은 이미 혁파되었으니 醫藥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 섬의 審藥은 약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들로 구차하게 채워 보냅니다. 醫理에 밝은 이를 뽑아 보내주면 폐단이 제거될 것입니다”라고 여러 날 와서 호소했다. 중국 역사 기록 가운데 음사를 철폐한 때가 있었지만, 혹 임금에게 아뢰고, 금령을 내려 관가에서 억지로 헐었던 것이지만, 이번 일은 조정의 명령도 없었고, 관가에서 금지 명령도 없었는데 누천년의 풍습이 하루 아침에 없어졌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또 들으니 백성들 사이에서 모두 이전에 숭상하고 받들어 치성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질병과 怪雨가 매번 곡식을 해쳤고, 또 배도 많이 전복되었습니다. 이제 불을 태우고 韃靼한 지 몇 달이 지나지만 이익이 있지 해는 없으며, 일찍이 전에 속임을 당했음이 매우 분통한 일로 여깁니다. 남녀 노소가 모두 축하하고, 무격을 보기를 원수 보듯하며, 그들과 함께 무리되었던 것을 부끄러워 합니다.(『南甯博物』)

위의 내용을 보면 이형상 목사가 강제로 신당을 철거하고 무격의 곳을 금지시킨 것이 아니다. 이형상은 다만 백성들의 원하는 바를 조정에 상신하여 허락을 받아내고, 다른 목사들과는 달리 백성들을 못살게 굴지 않자, 스스로 백성들이 감격하여 나서서 신당을 철거하고 무격들도 자발적으로 모든 곳을 중지하고 농민으로 돌아갔다

는 것이다.

과연 그랬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검토할 문제가 있다.

첫째, 『行狀』과 『南甯博物』의 기록은 당시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지만, 어디까지 이형상 자신의 입장에서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가 죽은 뒤 후손이 기록한 『行狀』의 A에는 그가 음사를 철폐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되어 있지만, 막상 그 자신이 기록한 『南甯博物』의 B, C, D, E에는 신당을 철폐하라는 아무런 지시도 내린 적이 없고, 또 공권력 투입하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신당을 철폐했다고 했다. 이 점에 관해서는 『行狀』의 기록이 더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저술에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서술한 것은 자신의 행위를 미화한 것이고, 당시 상황을 볼 때 사실로 보기 어렵다. 그는 제주목사로 오기 직전에 慶州 府尹을 역임했는데, 그곳에서 관청 내에 있던 신당 2개소와 각 촌락의 叢祀 36개소를 모두 불살라 버리고, 그 터를 몰수해 學宮에 강제로 속하게 했던 前歷이 있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그는 제주도에 오기 이전부터 무교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교 탄압을 실천에 옮긴 경험이 있었던 것이다²⁵⁾. 따라서 제주도에 부임할 때 이미 그는 경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당 철폐를 구상하고 계획했었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형상은 소론 계열에 속한 유학자로 그가 갖고 있던 유교 사상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유교 이념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관한 다양한 저술을 남겼고, 특히 禮樂을 실현하는 길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유교 원리의 전파라고 생각했던 인물이었다²⁶⁾.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민중의 지배적인 신앙이었던 무교를 깨뜨리는 것이 먼저 해결할 과제였다. 신앙의 중심인 신당을 파괴하고, 굿을 금지하고, 무교 지도자인 무격을 그만두게 한 다음, 그 바탕 위에서 흐트러져 있던 유교 원리를 정립하려 했던 그의 행동은 그의 철학에 바탕을 둔 행위였다.

둘째, 그가 추진한 신당 파괴를 앞장서서 실천에 옮긴 것은 유생을 필두로 한 향촌 지배 세력이었다. “20일 鄉所의 儒生, 武士, 각 면의 面任, 각 리의 里任들이 서로 정결한 곳에 모여 북쪽을 향해 네 번 절한 뒤, 800여명이 臣에게로 와서 말하였다”는 기록의 향소의 유생과 무사는 당시 향촌의 지배 세력을 가리키며, 面任과 里任은 실무 담당자들이다. 이들을 한편 일반 민의 대표자로 파악할 수도 있지만, 이들과 일반

25) 權寧徹, 『瓶窩李衡祥研究』, 韓國研究院, 1978, 12-3쪽.

26) 위의 글, 20-31쪽.

백성 사이의 이해 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전제하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된다.

앞서 지적했듯이 목자와 잠녀는 물론 평민들이 배 건조에 동원되는 고된 역을 줄여주는 조치를 통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도 있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오래 근무한 무관들에게 벼슬길을 열어주고, 주로 양반가에서 중요시되었던 양자 입적 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퇴락해 가던 향교를 적극적으로 수리하도록 한 것은 토착 지배 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였다. 이러한 배려는 모두 당시 지역 사회에서 그리 큰 힘을 쓰지 못하던 기존 유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조치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향촌 지배 세력을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끌어들이고, 이들을 통해서 신당 파괴를 추진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유교와 민중 종교의 대립 과정을 보게 된다. 향촌 지배 세력이 한편 유교를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민중들의 동향, 즉 무교를 중심으로 편성된 제주도민들의 종교적 관행을 무시하고 억압하기는 어려운 이중적인 처지에 있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형상 목사 이전에 왔던 목사들 역시 제주도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무당 세력과의 정면 대결을 피해온 것이 사실이었다. 신당을 파괴하고 무당 조직을 해체시키는 것은 엄청난 갈등을 예상해야 했으며, 이를 추진하려면 강한 신념이 뒷받침되어야 했다. 따라서 토착 지배 세력들, 특히 유생들은 비록 그들이 지배 세력의 일원이었지만 무당 세력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이 당시의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형상 목사가 부임하고 그가 적극적으로 무교 탄압을 강조하고 나오자, 유생들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관권력을 등에 업고 종교 지도자 조직인 무격들에게 타격을 가할 상황이 조성된 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면임, 이임 등을 앞세우면서 신당을 파괴하는 데 앞장섰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신당을 파괴한 충격이 매우 컸지만, 이형상이 제주를 떠난 뒤에도 무격들은 여전히 존재했고, 신당은 다시 복원되었으며, 많은 주민들이 곳을 매우 중요한 종교적 행사로 계속해 왔다는 점이다. 이형상이 나중에 정리한 『남환박물』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이제 들으니 후임자가 도입한 다음날 크게 곳을 행하였다. 또 무당들이 빨리 신당을 복구하도록 하고 醫生을 파하였다. 백성들이 낙담하여 등소장으로 정지할 것을 청하였으나, 오히려 조금도 늦추지 않았다. 또 巫女案을 만들어 전과 같이 면포를 거두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지배체제와 주민의 신앙

니 무당들은 財力を 내어 이미 폐하였던 신당을 세웠다고 한다. 가히 한심스럽다.

위 기록을 보면, 후임 목사 李喜泰는 부임하자마자 일반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무교 활동을 허용하였다. 위의 글에서 백성이란 모든 백성이 아닌 양반 유생들이라고 생각된다. 모처럼 이형상 목사의 위세를 등에 업고 신당 철폐를 감행했던 토착 지배 세력은 상황이 反轉되면서 크게 당황했을 것이다. 후임 목사가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은 평민 천민들로부터 오히려 공격받는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이형상이 파직당해 돌아간 불과 4년 뒤의 상황을 향촌 지식인이었던 김석익은 “숙종 32년(1706) 禁巫覡之惑誣 收其所藏 鳴鼓金鐸 付軍器”라고 표현하여 매우 불만스러워 하는 기록이 나온다²⁷⁾. 이형상이 돌아가자마자 무격들의 활동이 다시 계속되었고, 양반 유생들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을 것이다.

4. 유교 의례의 정비

이형상은 무교를 억누른 위에서 본격적으로 유교적인 교화를 수행할 바탕을 마련해 갔다. 그 첫 번째 조치가 퇴락한 향교를 수리하는 일이었다. 그가 향교를 찾아가 보니 건물이 관리가 되지 않아, 비가 새고, 널빤지가 썩고, 기와가 많이 부서져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이 섬의 士風은 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聖廟(향교를 가리킴)에 풀이 무성하여 귀로 듣고 눈으로 봄에 해괴하고 수치스럽습니다.”²⁸⁾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먼저 삼읍의 대성전·명륜당·동서재 및 제기·제복 등을 수리하고 位板 중에서 낡은 것을 고치거나 교체하였다. 그리고는 양반 유생 중에서 訓長을 임명하였고, 향교에서 유생들을 뽑아 공부를 시키고, 수시로 감독하면서 상벌을 내렸다²⁹⁾. 이러한 조치가 유교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었은 분명하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국가 제사 체계를 정비하게 된다. 당시 이형상목사가 중앙 정

27) 金錫翼, 『耽羅紀年』, 『耽羅文獻集』, 제주도 교육위원회, 1976.

28) 李衡祥, 『南甯博物』.

29) 李衡祥, 『南甯博物』.

부에 건의한 내용 중에서 먼저 風雲雷雨祭를 살펴보겠다. 祀典에 의하면, 풍운뇌우제는 중앙 조정에서만 제사를 지낼 뿐 격이 한 단계 낮은 군현 단위에서는 제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유독 제주도에서는 풍운뇌우제를 지내왔으며, 그것도 “郡을 설치한 초부터 風雲雷雨壇이 있어 본주에서 제사를 지내왔다”³⁰⁾고 하였다. 이것은 풍운뇌우제가 탐라국 시대에 시작되었고, 고려 숙종 때 군현으로 편입되었지만 계속 허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형상이 부임한 조선후기까지도 계속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군현 단위가 아닌 중앙 정부 수준의 의례를 감히 제주도라는 牧 단위에서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부임해오는 목사들이 풍운뇌우제가 군현 단위에서 지낼 수 없는 제사임을 몰랐을리는 없다. 그러나 제주도민들에 의해 중요한 의례로 유지되어온 것임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타협해 허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제사의 형식은 중앙 정부와는 달리 社稷大祭와 동시에 치루는 것이었다. 이형상은 “본주의 구례는 매년 봄 가을 社稷祭日에 따로 사직단 아래에 단을 하나 설치하여 풍운뇌우에 제사하며 또 位板을 만들어 사직의 위판을 두는 室에다 봉안합니다. 생각하건데 필시 전부터 탐라의 구례를 답습해 온 것입니다.”³¹⁾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직대제 때 공식적인 제사 대상은 물론 사직신이었지만, 실제로 제사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관심은 오히려 사직단 아래에 동시에 설치된 풍운뇌우단의 풍운뇌우신에게 쏠리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태를 심각하게 판단한 이형상이 사직대제의 원래 의미를 회복하고 탐라국의 전통을 단절시키려는 의도가 바로 풍운뇌우제의 중지 요청으로 나타났으며, 이형상목사의 요청은 정부에 의해 곧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그가 제주목사직을 떠난 뒤 얼마 되지 않아 풍운뇌우제는 곧바로 복설되었다. 제주민들은 풍운뇌우단을 없애 버렸기 때문에 배가 바다에 빠지고, 흉년이 들고, 전염병이 도는 등 각종 재앙이 발생한다고 믿었다. 후임 목사가 풍운뇌우제의 복

30) 『肅宗實錄』 肅宗 45년(1719) 11월 壬申.

31) 李衡祥, 「濟州請祀典變通狀」

32) 濟州에 風雲雷雨壇을 세우라고 명하였다. 이보다 앞서 제주에는 고을을 創設한 초기부터 풍운뇌우단이 있어 本州에서 致祭하였는데, 牧使 李衡祥이 州官이 사사롭게 제사할 바가 아니라고 狀聞하여 혁파하였다. 그후 島中에 해마다 飢荒과 凶疫이 그치지 않자, 州民들이 ‘壇祀를 혁파한 데에서 탈이 난 것이다.’ 하고, 지금의 牧使 鄭東後에게 다시 설치할 것을 호소하니, 정동후가 조정에 啓聞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예조에서 복주하여 허락할 것을 청하니, 세자가 그대로 따랐다. 이 해부터 京師에서 香祝을 내려 보내어 제사하게 하였다. 肅宗實錄 卷64 肅宗45年 11月 壬申.

설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는 이를 허가했다³³⁾. 만약 정부가 제주민의 열렬한 바람을 무시하고 祀典에 기록된 원칙 만을 중요시했다면, 풍운뇌우단은 복설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제주민들의 신앙 상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따라서 그들이 바라는 풍운뇌우제를 회복시켜 준 것이다. 이 때부터 풍운뇌우제는 사직대제와는 분리되어 독자적인 제사로 확립되었다.

다음으로 한라산제를 보자. 한라산제는 한라산신을 모시는 제사로, 祀典에 嶽海濱으로 기록되어 있는 제사의 하나였다. 전국 유명한 산, 바다, 강에는 모두 山神, 바다신, 강의 신이 존재하고 이들이 인간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은 매우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민간 신앙이었다³⁴⁾. 하지만 이형상목사는 한라산신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하면서, 祀典에 올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옳다고 건의하고 있는 것³⁵⁾을 보면 한라산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형상 목사의 건의는 받아들여져 한라산제는 공식적인 국가 제사로 채택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 시기에 한라산신을 모시는 廣壤堂이 강제로 파괴되었다는 점이다. 제주민들은 광양왕과 한라산신을 탐라국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받아들여 왔다. 물론 이 때 제사 방식은 유교식이 아닌 무교식의 '굿'이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제주도민들에게 한라산신을 모시는 광양당과 뱀신을 모시는 遮歸堂 제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³⁶⁾. 하지만 이것을 계속 허용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산신제는 국가 제사 중에서도 핵심에 속하는 것이었다. 특히 大祭가 공식적으로 치루지 못하던 조선왕조로서는 하늘의 現身으로 이해되던 산신에 대한 제사는 대단히 중요한 제사였다. 그리고 이 제사는 왕 또는 왕을 대신한 지방관리에 의해서만 치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일반 민에 의한 제사는 금지되던 것이었기 때문이다³⁶⁾.

33) 산신은 흔히 하늘님이 인간 가까이 머무는 것으로, 또는 역사상 중요한 실존 인물이 죽어 산신이 된 것으로 이해하면서 이들이 국가를 지켜주는 護國神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믿어, 고려시대에는 산에 爵位를 내리는 것이 일종의 관행처럼 되어 있었다. 金榮振, 『韓國自然信仰研究』, 民俗苑, 1996. 朴晔遠, 『韓國 共同體 信仰의 歷史的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7.

34) 李衡祥, 「濟州請祀典變通狀」

35) 조성윤, 「19세기 제주도의 국가 제사」, 183쪽.

36) 조선시대에는 무당 승려, 도사들을 통해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전국의 중요 산천에 대한 제사를 악해독과 명산대천으로 크게 구분하여 등급화하는 한편 민간의 제사를 금지하고 국가가 직접 제사를 지내도록 바꾸었다. 金榮振, 앞 글, 朴晔遠, 앞 글.

결국 이형상의 조치는 유교식 한라산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내도록 복설한 것은 광양당을 파괴하여 한라산신에 대한 민간 제사를 탄압하는 대신, 한라산신에 대한 제사를 국가가 주도하면서, 유교식으로도 한라산신을 모실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형상은 老人星과 馬祖에 대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는데, 제주도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노인성이 나타나는 지역이며, 또 중요한 목장지대이므로 해마다 향축을 내려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것이 祀典의 본래 뜻에 맞다고 지적하면서, 제사를 지내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올려 허락을 받았다³⁷⁾.

한편 그는 제의의 절차도 세심하게 살펴 祀典에 어긋난 부분을 고쳤다. 그 대표적인 것이 釋奠祭였다. 석전제는 공자를 모시는 향교에서 열리는 제의였다. 이 때 성균관에서는 소, 양, 돼지 3가지 희생을 쓰고, 州縣에서는 다만 양과 돼지 2가지 희생을 쓰는 것이 규례인데, 제주도에서는 계속 소, 양, 돼지 3가지 희생을 사용해 왔다. 이형상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탐라의 옛 관습을 따르는 것으로, 이제는 고쳐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여 허락을 받았다.³⁸⁾

마지막으로 그는 三性祠를 건설하게 만들었다. 역대 始祖를 모시는 제사는 小祀의 하나로 祀典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주도 三姓穴은 유교식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그가 부임하기 얼마전부터 제사가 시작되었지만, 제대로 격식이 갖추어져 있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삼성에 대한 제사를 사라진 국가의 시조를 모시는 제사로 간주하여 중요시했다. 때문에 직접 나서서 위판을 만들어 세우게 하면서 정부에 제사를 계속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한 것이다. “도민이 힘을 합하여 廟를 세우고 고을나, 양을나, 부을나를 主壁으로 삼고 高厚·高淸 및 季를 배향하여 춘추로 享祀를 꾀하고 있습니다. … 도민이 묘를 세움은 정리와 예의에 맞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들이므로 埋沒됨은 부당합니다. … 또한 임의로 사사로이 묘를 만드는 것도 부당합니다. 위판을 봉안한 후에 다시 아뢰는 것이니 임금께 아뢰어 분부를 받아 賜額해 주심이 어떻겠습니까?”³⁹⁾라는 장계의 내용이 이를 말해준다.

이상 간략히 검토한 대로 이형상은 무교를 철저하게 탄압하고 그 위에 군현 수준

37) 李衡祥, 「濟州請祀典變通狀」.

38) 李衡祥, 「濟州請祀典變通狀」.

39) 李衡祥, 「濟州請祀典變通狀」.

에서 시행되어야 할 유교식 국가의례를 집중적으로 정비하였다. 그는 유교식 국가의례의 정비야말로 곳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민들의 무교 신앙을 대신하여 유교 이념을 도민들의 머리 속에 심어줄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로 인식하고 있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가 정비한 유교 의례들이 대부분 전에는 전혀 없었던 의례를 새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탐라국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관습화된 의례들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것을 폐기하고, 그 위에 유교 의례를 덧씌우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제주도에 탐라국 시대부터 이미 무교를 바탕으로 하는 독특한 의례 체계가 있었으며, 이것이 제주도의 일반 백성 뿐만 아니라 토착 지배 세력들의 정신 세계까지도 지배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관행은 고려에 군현으로 편입된 이후, 조선초의 토관제가 완전히 폐지된 이후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생명력을 갖고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형상의 작업은 빈터에 새로운 유교 의례를 세운 것이 아니라, 무교를 바탕으로 한 탐라국 시대의 전반적인 의례 체계를 유교식 의례로 전면 개편하는 작업이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왜 조선왕조가 시작된지 이미 300년이 지난 숙종 때까지도 제주도에 탐라국의 유제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일까? 이형상 부임 이전에 제주도에 부임했던 많은 목사들이 탐라국의 유제가 祀典의 규정과 어긋나는 것임을 몰랐을 리가 없다. 더구나 그것이 민간에서 행해지는 곳의 수준이 아니라 군현 단위의 국가 의례였으며, 그 의례들을 제관이 되어 직접 봉행했던 목사들은 다른 지역의 의례를 많이 주관해 보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당연히 그 차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이 제사들을 지방관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예조가 일일이 준비하고 지시하는 바에 따라 제사 날짜와 축문, 제물을 받고, 엄격한 규정에 따르도록 했었다. 제사에 대한 지방관의 임무는 막중했으며, 원칙적으로 지방관이 제사를 소홀히 하거나 잘못을 저질러 제사를 정상적으로 치루지 못했을 경우에는 관직에서 물러나 처벌을 받도록 할 정도로 조선 정부는 제사를 중요하게 여겼다.⁴⁰⁾ 그런데도 탐라국의 유제가 그대로 이어져 온 것은 다른 목사들이 그것들을 개혁하려 했을 때 필연적으로 부딪치게 될 저항을 고려하여 현실과 타협해왔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세력 중에는 일반 백성들도 있었지만, 토착 세력으로서 鄕吏 세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사실 향리 세력은 토착

40) 조성윤, 「정치와 종교: 조선시대의 유교 의례」.

지배 세력으로서의 위상을 나름대로 견지하고 있었다. 조금 후대의 것이지만 <입춘굿>에 관한 기록을 보자.

12월 24일 입춘일이다. 戶長은 官服을 갖추어 입고 나무로 만든 소가 끄는 쟁기를 잡고 양쪽에서 어린 기생이 좌우로 부채를 들고 따른다. 이를 '退牛(소몰이)'라고 부른다. 무당들은 북을 치며 열심히 앞길을 인도한다. 먼저 客舍에서 시작하여 차례로 齋庭 마당에 들어와서 발가는 모양을 흉내내었다. 이 날은 관아에서 음식을 마련하여 모두에게 대접하였다. 이것은 耽羅王이 籍田하는 풍속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한다.⁴¹⁾

이것은 憲宗 7(1841)년 李源祚가 제주도에 부임해 있는 동안 열렸던 입춘굿을 관찰하고 기록한 것이다. 그가 "탐라왕의 유습"이라고 지적하였듯이 입춘굿은 탐라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농경의례인데, 1841년까지도 왕이 몸소 발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던 농경의례가 전승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 제의는 향리 집단이 주도하고 있었다. 특히 戶長이 직접 '소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 것은 농경의례의 핵심에 해당하며, 과거에는 아마도 탐라국왕이 담당했던 의례 부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앞에는 무당들이 그리고 좌우에는 어린 기생들이 함께 행렬을 이루면서 제주목 관아 중요한 건물을 순례하였다. 또한 행사를 마치면 관아에서 음식을 마련해 대접했다고 하는데, 이 때 경비를 부담한 것은 향리집단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향리 집단이 하급 관속들과 일반 민들에게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고 동시에 그들과의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는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같은 농경의례는 籍田에서 행하는 국왕의 親耕 의례와 같은 형태로 짐작되며, 지방관에게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의례를 호장이 주관하고 행하는 것을 이원조 목사는 그대로 관찰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있을 뿐, 직접 관여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향리집단 주도로 시행되는 입춘굿을 현실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지방관과 향리 집단 사이의 일종의 타협의 목적이 성립되어 있는 것이라 하겠다.⁴²⁾

이 점을 감안한다면, 이형상 목사는 다른 목사들과는 달리 일체의 타협을 거부하고 유교 원리를 지역 사회 차원에서 철저히 관철시키려 했던 인물이었다. 달리 표

41) 李源祚의 『耽羅錄』 중 「立春日畱韻」

42) 지방관과 향리 집단의 제의를 둘러싼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李助相, 「朝鮮後期 邑治 社會의 構造와 祭儀- 鄕吏集團의 正體性 혼란과 邑治 祭儀의 遊戯化」, 『歷史學報』 第147輯, 歷史學會, 1995.

현하면 그는 유교 근본주의자(Radicalist)였다. 만약 그가 정비해 놓은 유교 의례 체계가 그가 의도한 대로 그가 떠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작동한다면, 유교 이념이 제주 사회에 뿌리내리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유교식 제사의 주기적 반복은 유교 이념이 의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관습화되게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교 이념이 정치적 차원에서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였다. 이런 점에서 그는 유교식 지배 체제의 확립과 재생산을 바로 유교 제사 체계의 확립을 통해 시도하려 했던 것이며,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당시 향촌 지배 세력들이 유교적 지배 체제를 확립하면서, 그러한 바탕 위에서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목사로 파견되었던 많은 유교 지식인들 중에서 예외에 속하는 인물이었다. 그가 부임하기 이전에도 그랬듯이, 그 이후에 부임한 목사들도 대부분 현실과의 타협 속에서 일반 대중들의 무교 신앙 행위와 향리 집단이 주도하는 전통 의례의 유제를 인정하면서 통치하였을 것이다.

5. 맺는 말

이형상이 제주도에 목사로 부임하면서 일대 개혁을 단행한 시기는 老論을 중심으로 한 전면적인 유교식 체제 개혁이 진행된 시기였다. 유교 체제 정비 및 개혁 작업은 대체로 숙종조부터 영조까지의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형상의 신당 철폐와 제사 체제 정비 작업은 이러한 당시 유교 지식인들의 분위기를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한다.

당대의 탄탄한 유학자이자 개혁가였던 이형상은 오랫동안 뿌리깊게 제주 민중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던 무교의 힘을 약화시키고, 유교를 정착시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인물이었다. 이형상은 부임하자마자 제주도에 널리 퍼져 있던 수백개의 당과 절을 조사해서 이들을 거의 모두 파괴하였다. 그 결과 당과 절은 거의 모두 파괴당하는 수난을 겪었으며, 오랫동안 제주 민중들 사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던 무당 세력도 힘을 잃었다. 한편 이형상은 국가 제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풍운뇌우제가 폐지되고, 한라산제와 삼성사 시조제가 새롭게 시작되었으며, 석전제의 규례가 바뀌었고, 노인성제, 마조제 등이 검토했었다.

이형상이 보여준 개혁 사업에 나타난 신당 철폐와 함께 그가 확립하려 했던 국가

제사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배층인 유교 세력이 제주도민들에게 보여준 대표적인 종교 행위이자, 통치 행위였다고 생각된다. 국가는 제사의 주기적 반복을 통해서 유교 이념이 정치적 차원에서 유지됨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었고, 동시에 지배 구조에 신성함을 부여하는 상징적 의도를 담고 있었다. 이를 통해 유교의 타종교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대중들 머리 속에 심어 놓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형상의 시도는 전통적인 민중들의 의식 세계와 생활 관습에 커다란 타격을 가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때문에 무적들의 활동은 이형상이 떠나면서 곧바로再開되었고, 풍운뇌우제도 복설될 수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유교식 제사 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불교 제의는 물론 무교의 굿을 비롯한 각종 민간신앙 형태의 제의가 같은 시대에 병존하고 있었다. 이들 각 종교는 나름대로 독특한 교리 체계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제의 구조를 확립하고 있었다. 지배층은 이들 각 종교를 억압하면서 유교를 통한 국가 건설과 운영을 추구하고 있었지만, 무작정 막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억압하면서 부분적으로는 허용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무교의 부분적 허용은 이러한 바탕 위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형상의 개혁 작업은 당시 유교 지배층의 적극적인 유교식 체제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며, 제주도 민중의 의식과 관습에 커다란 타격을 가해 상당한 정도로 약화시키는데 기여하였고, 반면 유교식 제도와 관습이 정착하고 유생을 비롯한 지배 세력이 힘을 얻도록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었다.